

## 제11장 지식재산

### 제1절 일반 규정과 기본 원칙

#### 제11.1조 목적

1. 이 장의 목적은 다음을 인정하면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창출, 활용, 보호 및 집행을 통하여 심층적인 경제 통합 및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무역과 투자에 대한 왜곡과 장애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가. 당사자들의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및 역량 그리고 국가 법 제도의 차이

나. 혁신과 창의성 증진의 필요성

다. 지식재산 권리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및 공공이익 간 적절한 균형 유지의 필요성

라. 정보, 지식, 콘텐츠, 문화 및 예술의 보급 촉진의 중요성, 그리고

마. 투명한 지식재산 제도의 확립과 유지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및 집행의 증진과 유지가 권리자 및 사용자에게 신뢰를 제공한다는 것

2.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은 기술 지식 생산자와 사용자의 상호 이익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기술 혁신의 증진 및 기술의 이전과 확산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제11.2조 지식재산의 범위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이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1절부터 제7절 까지에서 언급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반도체 지형학), 식물 품종의 보호 및 미공개 정보의 보호를 말한다.

## 제1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sup>1</sup>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규정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러한 불일치의 범위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 제11.4조 원칙

1.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공중 보건과 영양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및 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과 합치되어야 한다.
2. 적절한 조치는 이 장과 합치하는 한,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것 또는 무역 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기술의 국제적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행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sup>2</sup>
3. 제2항에 더하여, 당사자들은 경쟁을 증진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

<sup>1</sup> 이 조의 적용의 목적상, 당사자들은 이 장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지식재산 보호를 규정한다는 사실이 이 조 및 제 20.2 조(다른 협정과의 관계) 제 2 항의 의미에서 불일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동의한다.

<sup>2</sup> 당사자들은 지식재산권 자체가 반드시 시장 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 제11.5조

### 의무

각 당사자는 이 장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한다. 당사자는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자신의 법에서 이행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 제도와 관행 내에서 이 장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 제11.6조

### 지식재산권의 소진

각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소진에 대한 자신의 제도를 자유롭게 수립한다.

## 제11.7조

###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그 당사자가 당사자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장하는 다자 협정에서 규정된 예외에 따라 지식재산의 보호<sup>3</sup>에 대하여 자신의 국민<sup>4</sup>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자들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지정하거나 자신의 영역에서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다른 당사자의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1항에 언급된 예외를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

<sup>3</sup> 이 항의 목적상, “보호”는 구체적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이용 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이 항의 목적상, “보호”는 다음에 관한 규정을 또한 포함한다.

가. 제 11.14 조(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에 규정된 효과적인 기술 조치, 그리고  
나. 제 11.15 조(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에 규정된 권리관리정보

<sup>4</sup> 이 항의 목적상, 당사자의 “국민”은 관련 권리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제 11.9 조(다자 협정)에 열거된 협정에 규정된 보호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제 1.2 조(일반 정의)비호에 정의된 대로의, 그 당사자의 모든 인을 포함한다.

가. 그러한 예외가 이 장에 불합치하지 않는 자신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나. 그러한 예외가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지식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다자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11.8조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 보건

1. 당사자들은 2001년 11월 14일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을 재확인한다. 특히 당사자들은 이 장에 관하여 다음의 양해에 이르렀다.

가. 당사자들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에 적절하게 인정된 유연성을 충분히 사용할 권리를 확인한다.

나. 당사자들은 이 장이 당사자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금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다. 당사자들은 이 장이 공중보건을 보호할 각 당사자의 권리, 그리고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할 각 당사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리해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2.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공중보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약속을 인정하여, 이 장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의2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부속서 및 부속서에 대한 부록의 효과적인 이용을 금지하지 않고 금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당사자들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의2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

산권에 관한 협정 부속서 및 부속서에 대한 부록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 제11.9조

#### 다자 협정

1. 각 당사자는 아직 당사자가 아닌 다음의 다자 협정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다.

- 가.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채택되고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수정되었으며 1979년 9월 28일 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이하 이 장에서 “파리 협약”이라 한다)
- 나. 1886년 9월 9일 베른에서 채택되고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수정되었으며 1979년 9월 28일 개정된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이하 이 장에서 “베른협약”이라 한다)
- 다. 1970년 6월 19일 워싱턴에서 채택되고 1979년 9월 28일 개정되었으며 1984년 2월 3일과 2001년 10월 3일 수정된 「특허협력조약」
- 라. 1989년 6월 27일 마드리드에서 채택되고 2006년 10월 3일과 2007년 11월 12일 개정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이 장에서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 마.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 바.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그리고
- 사.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이 장에서 “마라케시 조약”이라 한다)

2. 각 당사자는 아직 당사자가 아닌 다음의 다자 협정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977년 4월 28일 부다페스트에서 채택되고, 1980년 9월 26일 개정된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3. 어떠한 당사자가 다음의 다자 협정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다자 협정의 비준 또는 가입과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

가. 1991년 3월 19일 제네바에서 수정된 「식물신品种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의 1991년도 법

나. 1999년 7월 2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해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

다.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채택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이 장에서 "로마 협약"이라 한다), 그리고

라. 2006년 3월 27일 싱가포르에서 채택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제2절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제11.10조

##### 저작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

1. 각 당사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2. 각 당사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음반을 각각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sup>5</sup>에게 제공한다.

3. 각 당사자는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든 그의 저작물, 음반에 고정된 실연 및 음반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 제11.11조

####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sup>6</sup>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방송을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 또는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을 권리 를 향유한다.

### 제11.12조

#### 방송사업자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방송사업자에게 최소한 무선 수단에 의한 그들의 방송의 재방송, 방송의 고정 및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sup>7,8</sup>

<sup>5</sup> 이 장의 목적상, 당사자는 “음반제작자”가 “녹음을 저작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up>6</sup> 당사자가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이 조에 따른 그 당사자의 의무는 그 당사자가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에 따라 했거나 할 약속 및 유보의 대상이 된다.

<sup>7</sup> 당사자가 방송사업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방송의 대상인 저작권의 소유자에게 베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위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sup>8</sup> 어떠한 당사자도 이 항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와 관련하여 로마 협약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조건, 제한, 예외 및 유보를 규정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다음의 행위 중 최소한 하나에 대하여 조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가. 고의적인 수신<sup>9</sup>

나. 고의적인 배포<sup>10</sup>, 또는

다. 고의적인 수신과 추가 배포<sup>11</sup>

### 제11.13조

#### 집중관리단체

1. 각 당사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 관리를 위한 적절한 단체의 설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단체들이 사용료<sup>12</sup>의 징수 및 분배에 대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기록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적으로 투명하고 그 단체들의 구성원에게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장려한다.

2.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 콘텐츠의 보다 쉬운 이용허락을 상호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 국민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대상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 송금을 장려<sup>13</sup>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 각자의 집중관리단체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sup>9</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 2 항가호 및 다호의 목적상, 당사자는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고의적인 수신이란 그 신호의 수신 및 사용 또는 그 신호의 수신 및 해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sup>10</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배포”를 “공중에게 재송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sup>1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배포”를 “공중에게 재송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sup>1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료”는 공평한 보상을 포함할 수 있다.

<sup>1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려”는 당사자가 집중관리단체 간 계약 약정을 중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제11.14조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각 당사자는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이 절에서 언급된 그들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들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해당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 제11.15조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전자적 권리관리정보<sup>14</sup>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이 장에 언급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 구제에 대하여는 이를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다음의 행위를 권한 없이 고의로 행하는 인으로부터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 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음반에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하거나, 공중 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 제11.16조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및 구제 제공의 제한 및 예외

---

<sup>14</sup> 이 조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음반에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 음반에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 전달 또는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음 정보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저작물 · 실연 · 음반,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 또는 저작물 · 실연이나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 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 다. 이 각주의 가호 및 나호에 기술된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11.14조(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및 제11.15조(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보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과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2. 제11.14조(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및 제11.15조(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에 규정된 의무는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대한 권리, 제한, 예외 또는 항변을 저해하지 않는다.

### 제11.17조

#### 정부의 소프트웨어 사용

각 당사자는 다음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확인한다.

- 가. 이 장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중앙 정부가 비침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 규정 또는 정책을 유지, 그리고
- 나. 자신의 지역 및 지방 정부가 가호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장려

### 제11.18조

#### 제한 및 예외

1. 각 당사자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sup>15</sup>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베른 협약, 로마 협약, 「세계지적 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또는 「세계지적 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의 당사

---

<sup>1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되는 지식재산에 관련된 다자 협정에 따라 그 당사자가 방송에 대하여 제한 또는 예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자로서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한 및 예외의 적용 가능성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

3. 각 당사자는 교육, 연구, 비판, 논평, 뉴스보도 및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포함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제1항과 합치하는 제한 및 예외의 수단을 통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도에서 적절한 균형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가 제1항에 기술된 대로 한정되는 한, 당사자는 그러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제3절 상표

#### 제11.19조 상표 보호

각 당사자는 한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지 또는 표지의 조합은 상표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그러한 표지, 특히 성명을 포함한 단어, 글자, 숫자, 도형적인 요소, 삼차원 형태와 색의 조합 및 그러한 표지의 조합은 상표로서 등록될 자격이 있다. 표지가 본질적으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사용을 통하여 얻어진 현저성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당사자도 상표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도 않는다.<sup>16</sup>

#### 제11.20조

---

<sup>16</sup> 당사는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상표의 충분한 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상표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당사자는 증명표장이 보호되는 한, 이를 자신의 법과 규정에서 별도의 범주로 취급할 의무가 없다.
2. 각 당사자는 또한 지리적 표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지가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른 상표 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제11.21조**

### **상표 분류 체계**

1. 각 당사자는 1957년 6월 15일 니스에서 채택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이하 이 장에서 "니스 협정"이라 한다)에 합치하는 상표 분류 체계를 채택 또는 유지한다.
2. 니스 협정에 의하여 수립된 분류 체계(이하 이 장에서 "니스 분류"라 한다)의 번역본에 의존하는 당사자는 발표 및 공표된 공식 번역본의 범위에서 니스 분류의 최신 버전을 따른다.

## **제11.22조**

### **상표 등록 및 출원**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등록 제도를 규정한다.
  -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건.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 나. 출원인이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상표 등록에 대한 최종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 다. 등록 전에 상표와 관련하여 다음 중 최소한 하나를 할 수 있는 기회
- 1)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제기, 또는
  - 2) 상표 출원이 등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
- 라. 등록된 후에 상표와 관련하여 다음 중 최소한 하나를 할 수 있는 기회
- 1) 등록에 대하여 이의제기
  - 2) 등록의 취하를 구하는 것
  - 3)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 또는
  - 4)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것, 그리고
- 마. 이의제기, 취하, 취소 또는 무효 절차에서 행정 결정<sup>17</sup>은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고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그러한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상표의 출원처리,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전자 출원 제도, 그리고
- 나.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전자적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제11.23조

---

<sup>17</sup> 이 호의 목적상, “행정 결정”은 준사법 결정을 포함한다.

## 부여되는 권리

각 당사자는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제3자가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에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저해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사용에 기반하여 권리를 이용 가능하게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 제11.24조

#### 예외

당사자는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제11.25조

#### 지리적 표시보다 앞선 상표의 보호

각 당사자는 상표가 자신의 관할권에서 지리적 표시보다 날짜가 앞서는 경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 상표를 보호한다.

### 제11.26조

#### 유명 상표의 보호

- 각 당사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sup>18,19</sup>와 동일하

<sup>18</sup> 이 항의 목적상, 당사자는 “유명상표의 복제, 모방 또는 번역”을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으로 취급할 수 있다.

<sup>19</sup> 당사자들은 유명 상표가 최초로 언급된 상표에 대한 출원, 등록 또는 사용 전에,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된 대로, 이미 유명했던 상표임을 양해한다.

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선행 유명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하고 상표 사용을 금지<sup>20</sup>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2. 각 당사자는 산업재산의 보호를 위한 파리 동맹 총회와 1999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의 제34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유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공동 권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어떠한 당사자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자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 유명 상표 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것 또는 유명 상표로 사전에 인정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제11.27조

#### 악의적 상표<sup>21</sup>

각 당사자는 상표 등록을 위한 출원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다.

### 제11.28조

#### 다수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동일 출원

각 당사자는 다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니스 분류의 하나의 류 또는 다수의 류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상표 등록을 위한 동일한 하나의 출원이 그 다수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그들의 조합에 관련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sup>20</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이 항에 따라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할 의무를 그려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 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준수할 수 있다.

<sup>21</sup> 이 조의 목적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표가 다른 인의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고려할 수 있다.

## 제4절 지리적 표시

### 제11.29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보장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보호가 상표 제도, 독자적 제도 또는 그 밖의 법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제11.30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

1. 당사자가 상표를 통해서 또는 독자적 제도를 통해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sup>22</sup>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보호를 위한 출원에 대하여,

가. 자국민을 대신한 당사자의 관여를 요구함이 없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그러한 출원을 접수한다.<sup>23</sup>

나. 그러한 출원을 합리적인 절차 및 형식에 합치되게 처리한다.<sup>24</sup>

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규율하는 자신의 법과 규정이 대중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출원의 제출과 관련한 절차를 포함하여 지리적 표시의 보호

---

<sup>22</sup> 이 조의 목적상, “행정 절차”는 준사법 절차를 포함한다.

<sup>2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출원이 그 지리적 표시가 그 다른 당사자 내에서 보호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자의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증거를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sup>24</sup> 당사자들은 이 조의 목적상 합리적인 절차 및 형식이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절차 및 형식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양해한다.

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라.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출원의 제출 절차에 관한 지침을 일반 대중이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특정 출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마. 그러한 출원이 이의제기가 가능하게 공표되도록 보장하고, 출원의 대상인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한다. 이의제기는 자국민을 대신한 당사자의 관여를 요구함이 없이 접수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지리적 표시에 부여되는 보호의 취소<sup>25</sup>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 제11.31조

#### 이의제기 및 취소의 근거

1. 제11.30조(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 제1항마호에 언급된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최소한 이해관계인이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최소한 지리적 표시가 그 당사자 영역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보통 명칭<sup>26</sup>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을 근거로 그러한 보호를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2. 당사자가 제11.30조(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에 언급된 절차를 통하여 지리적 표시의 번역 또는 음역에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번역 또는 음역의 보호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하여 제1항에 언급된 것과 최소한 동일한 근

---

<sup>2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의 목적상, 취소는 무효화 또는 취하 절차를 통하여 이행될 수 있다.

<sup>26</sup> 당사자가 포도주 및 종류주를 위한 지리적 표시 또는 그러한 지리적 표시의 출원에 이 조를 적용하는 경우,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관련 표시가 그 당사자의 영역에 존재하는 포도 종류의 관습적 명칭과 동일한 포도덩굴로 만든 제품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밖의 당사자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양해한다.

거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sup>27</sup>

3. 제1항에 언급된 절차와 관련하여, 용어가 당사자의 영역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보통 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지를 결정할 때,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소비자가 그 당사자 영역 내에서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소비자 이해와 관련된 요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그 용어가 사진, 신문 및 관련 웹사이트와 같은 권한 있는 출처에 표시된 것과 같이 해당 상품의 유형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나. 그 용어에 의하여 참조되는 상품이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판매되고 거래에 사용되는 방식<sup>28</sup>

4. 제11.30조(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제2항에 언급된 취소 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보호되는 용어가 그 당사자에서 보호가 원래 부여되었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을 근거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취소 또는 달리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 제11.32조

### 복합 명칭 용어

제11.30조(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 및 제11.31조(이의제기 및 취소의 근거)에 언급된 절차와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복합 명칭의 개별 명칭은 그 개별 명칭이 당사자의 영역에서 관련 상품을 위한 보통 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경우 그 당사자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sup>27</sup> 당사자는 이 항을 포도주 및 증류주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출원에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sup>28</sup> 이 호의 목적상, 당사자의 당국은 적절한 경우 그 용어가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상품의 유형 또는 류를 지칭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련 국제 표준에서 사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 제11.33조

### 지리적 표시의 보호일

제11.30조(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에 언급된 당사자의 국내 행정 절차<sup>29</sup>를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그 당사자 내 보호를 위한 출원일<sup>30</sup>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그 당사자 내 등록일 후 개시된다.

## 제11.34조

### 국제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

당사자가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가 참여하는 국제 협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거나 인정하고, 그 협정이 그 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체결되고, 그 지리적 표시가 제11.30조(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에 언급된 절차를 통하여 보호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는,

- 가.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소한 이해관계인이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요청의 상황을 확인하도록 허용한다.
- 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하여 고려되는 지리적 표시가 이의제기를 위하여 공표되도록 보장하고, 최소한 이해관계인이 제11.31조(이의제기 및 취소의 근거) 제1항에 언급된 근거로 그러한 지리적 표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며, 그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11.32조(복합 명칭 용어)를 적용한다.  
그리고
- 다.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가 참여하는 국제 협정을 통하여 그 당사자가 보호 또는 인정을 고려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

<sup>29</sup> 이 조의 목적상, “행정 절차”는 준사법 절차를 포함한다.

<sup>30</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지리적 표시를 상표 제도를 통하여 보호하는 경우, 이 조에 언급된 출원일은 적용 가능한 경우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 출원일을 포함한다.

한다.

### 제11.35조

#### 체결된 국제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

1. 어떠한 당사자도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가 참여하는 국제 협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그에 따라 보호 또는 인정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제11.34조(국제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를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그 협정은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체결되었어야 한다.
2. 새로운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협용하는, 제1항에 언급된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당사자는<sup>31</sup>
  - 가. 제11.34조(국제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다호를 적용한다. 그리고
  - 나. 그러한 용어가 보호되거나 인정되기 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최소한 이해관계인이 새로운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한다.

### 제5절

#### 특허

### 제11.36조

#### 특허 가능 대상

---

<sup>31</sup> 당사자는 제 11.30 조(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 및 제 11.31 조(이의제기 및 취소의 근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이 항을 준수할 수 있다.

1.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특허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제품 또는 공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sup>32</sup>해야만 한다. 제3항 및 제13절(경과기간 및 기술 지원)을 조건으로 발명의 장소, 기술 분야 그리고 제품이 수입되는지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지 여부에 대한 차별 없이 특허가 가능하고 특허권이 향유된다.
2. 당사자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신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신의 법과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 당사자는 또한 다음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수술방법, 그리고
- 나. 미생물을 제외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공정을 제외한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공정. 그러나 각 당사자는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하여 식물 품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당사자들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7조제3항나호가 개정되는 경우 이 호에 대한 유사한 개정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호를 검토한다.

### 제11.37조 부여되는 권리

1. 각 당사자는 특허가 특허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한다.

---

<sup>32</sup> 이 절의 목적상,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당사자에 의하여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과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다.

- 가. 특허 대상이 물건인 경우,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물건을 제조, 사용,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sup>33</sup>하는 행위의 금지, 그리고
- 나. 특허 대상이 방법인 경우,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최소한 그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획득된 물건을 사용,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하는 행위의 금지
2. 특허권자는 또한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에 의하여 이전하거나, 실시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 제11.38조

####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

당사자는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제11.39조

#### 권리자의 허락 없는 그 밖의 사용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 및 제31조의2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및 부속서에 대한 부록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 제11.40조

#### 특허의 실험적 사용

---

<sup>33</sup> 상품의 사용, 판매, 수입 또는 그 밖의 유통과 관련하여 이 장에 따라 부여되는 그 밖의 모든 권리와 같이 이 권리는 제 11.6 조(지식재산권의 소진)의 적용대상이다.

제11.38조(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를 제한함이 없이, 각 당사자는 특히 발명의 대상과 관련된 실험적 목적<sup>34</sup>으로 행해지는 행위의 경우, 누구나 그 특허를 달리 침해하게 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제11. 41조 심사 및 등록의 절차적 측면

1.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특히 제도의 모든 사용자 및 공중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 각자의 특히 제도의 질과 효율성 향상 및 그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절차와 과정의 단순화 및 간소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특히 제도를 규정한다.

- 가. 특히 부여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건
- 나. 특히 출원인이 그들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sup>35</sup>
- 다. 특히가 부여되기 전에 그와 관련하여 다음 중 최소한 하나를 할 수 있는 기회
  - 1) 특히 출원에 대한 이의 제출, 또는
  - 2) 특히 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정 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
- 라. 특히가 부여된 후에 그와 관련하여 다음 중 최소한 하나를 할 수 있는 기회

---

<sup>34</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제 11.38 조(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와 합치되게 어떤 행위가 “실험적 목적”의 의미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sup>35</sup> 이 호의 목적상, 당사자들은 “보정”은 정정을 포함할 수 있고, “의견진술”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출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을 포함하며, 그러한 답변이 출원의 보정이나 정정과 연계하여 주어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양해한다.

- 1) 부여에 대한 이의제기
  - 2) 취하를 구하는 것
  - 3) 취소를 구하는 것, 또는
  - 4) 무효화를 구하는 것, 그리고
- 마. 이의제기, 취하, 취소 또는 무효 절차에서 행정 결정<sup>36</sup>은 이유가 설명되고 서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요건. 그러한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 **제11.42조 특허 공지 예외**

당사자들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명이 신규성이 있는지를 결정할 때 발명의 특정 공지를 무시할 수 있는 특허 공지 예외의 이점을 인정한다.

#### **제11.43조 전자 특허 출원 제도**

각 당사자는 특허출원인에 의한 출원의 편의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 특허 출원 제도를 채택하도록 장려된다.

#### **제11.44조 18개월 공개**

1. 각 당사자는 특허 출원이 조기에 공개되었거나 취하, 포기 또는 거절<sup>37</sup>되지 않는 한 출원일부터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최선 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난 후 신속하게

---

<sup>36</sup> 이 조의 목적상, “행정 결정”은 준사법 결정을 포함할 수 있다.

<sup>37</sup> 당사자들은 이 조의 목적상 각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출원이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출원을 공개한다.

2. 진행 중인 출원이 제1항에 따라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해당 출원 또는 상응하는 특허를 공개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신의 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당사자가 여기는 정보를 그 당사자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각 당사자는 출원인이 제1항에 언급된 기간의 만료 전에 출원의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제11.45조

##### 인터넷상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선행 기술 정보

당사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가 선행 기술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제11.46조

##### 우선 심사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법, 규정 및 규칙에 따라 특허출원인이 자신의 특허 출원의 심사를 신속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국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1.47조

##### 국제 특허 분류 제도의 도입

각 당사자는 1971년 3월 24일 스트拉斯부르그에서 채택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국제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拉斯부르그 협정」에 합치하는 특허 분류 제도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 제11.48조

### 식물 신품종의 보호<sup>38</sup>

각 당사자는 효과적인 식물 품종 독자적 보호 제도를 통하여 식물 신품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 제6절

### 산업디자인

## 제11.49조

### 산업디자인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새롭거나 독창적인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규정한다. 당사자는 디자인이 알려진 디자인이나 알려진 디자인의 특징의 조합과 현격하게 다르지 않은 경우 새롭거나 독창적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그러한 보호가 본질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하여 요구되는 디자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직물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요건, 특히 비용, 심사 또는 공개에 대한 요건이 그러한 보호를 추구하고 획득하기 위한 기회를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자는 산업디자인 법 또는 저작권법을 통하여 자유로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다.

3. 각 당사자는 보호되는 산업디자인의 소유자가 보호되는 디자인의 복제 또는 실질적 복제인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를 갖도록 규정한다.

---

<sup>38</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물 품종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 11.36 조(특히 가능 대상) 제 3 항나호는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4. 각 당사자는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산업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5. 각 당사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다음의 디자인에 대하여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가. 물품의 일부로 구현된 디자인, 또는 대안적으로

나.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경우 물품 전체의 맥락에서 물품의 일부를 특별히 고려한 디자인

### 제11.50조

#### 인터넷에서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에 대한 선행 기술 정보<sup>39</sup>

당사자들은 인터넷에서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정보가 디자인에 대한 선행 기술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제11.51조

#### 산업디자인의 등록 또는 승인 및 출원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산업디자인 등록 제도 또는 승인 제도를 규정한다.

가. 산업디자인 등록 또는 승인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건.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

<sup>39</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에 자신의 행정 당국이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나. 출원인이 산업디자인에 대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산업디자인의 등록 또는 승인 거절에 대하여 항변, 이의제기 또는 불복청구할 기회
- 다. 등록이나 승인의 취소, 무효화 또는 취하를 구할 기회, 그리고
- 라. 취소, 무효화 또는 취하 절차의 행정 결정<sup>40</sup>은 합리적이며 서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요건. 그러한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 제11.52조 산업디자인을 위한 국제 분류 제도의 도입

각 당사자는 1968년 10월 8일 로카르노에서 서명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과 합치하는 산업디자인 분류 제도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 제7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sup>41</sup>

### 제11.53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1. 각 당사자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각 당사자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sup>42</sup>를 수립할 수 있다.

<sup>40</sup> 이 호의 목적상, “행정 결정”은 준사법 결정을 포함할 수 있다.

<sup>4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은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 간 위원회와 같은 포럼을 통한 모든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상을 포함하여,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어떠한 당사자의 입장도 저해하지 않는다.

<sup>4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그러한 “적절한 조치”는 각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이며 반드시 자신의 지식재산 제도를 수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한다.

2. 당사자가 자신의 특허 제도의 일부로서 유전자원<sup>43</sup>의 출처 또는 근원과 관련하여 공개 요건을 보유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실행할 수 있는 경우 인터넷을 포함하여, 그러한 요건에 대한 자신의 법, 규정 및 절차를 이해관계인과 다른 당사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양질의 특허 심사를 추구하도록 노력한다.
  - 가. 선행 기술을 결정할 때, 유전자원에 연계된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대중이 이용 가능한 관련 문서화된 정보가 고려될 수 있다.
  - 나. 제3자들이 유전자원에 연계된 전통지식과 관련한 선행 기술 공개를 포함하여, 특허자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선행 기술 공개를 권한 있는 심사 당국에 서면으로 인용할 기회, 그리고
  - 다. 적용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유전자원에 연계된 전통지식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지털 도서관의 사용

## 제8절 부정 경쟁

### 제11.54조

#### 부정 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 보호

각 당사자는 파리 협약<sup>44</sup>에 따라 부정 경쟁 행위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규정한다.

---

<sup>43</sup> 당사자들은 일부 당사자들이 적용 가능한 경우 그들의 특허 제도에 유전자원 및 연계된 전통지식에 대한 사전에 통지된 합의, 접근 및 이의 공유의 증거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sup>44</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관련된 경우 파리 협약 제 10 조의 2 가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부정 경쟁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 제11.55조

### 도메인 이름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ccTLD) 관리를 위한 자신의 제도와 관련하여, 그리고 자신의 법과 규정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사생활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련 관리자 정책에 따라, 각 당사자는 다음을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 정책에서 수립된 원칙에 기초하거나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진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 또는 다음의 절차

1)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절차

2)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

3)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절차, 그리고

4) 사법 절차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절차. 그리고

나. 인이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 의도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보유하는 최소한의 경우, 적절한 구제<sup>45</sup>

## 제11.56조

### 미공개 정보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제2항에 따라 미공개 정보의 보호를 제공한다.

---

<sup>45</sup> 당사자들은 그러한 구제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취하, 취소, 이전, 손해배상 또는 구제명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그럴 필요는 없음을 양해한다.

2. 제1항에 더하여, 당사자들은 제11.1조(목적) 제2항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하여 미공개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9절  
국가명칭

제11.57조  
국가명칭

각 당사자는 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의 국가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제10절  
지식재산권의 집행

제1관  
일반 의무

제11.58조  
일반 의무

1. 각 당사자는 침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추가적 침해를 억제하는 구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절에 명시된 집행절차가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절차는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의 설치를 피하고 그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를 제

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2.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절차는 공정하고 공평하도록 한다. 그 절차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한 기한 또는 부당한 지체를 수반하지 않는다.

3. 이 절을 이행할 때, 각 당사자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심각성과 적용 가능한 구제 및 처벌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경우 제3자들의 이익 간의 비례성에 대한 필요를 고려한다.

4. 당사자들은 이 절이 일반적인 법 집행을 위한 사법 제도와 구별되는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사법 제도를 마련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으며, 각 당사자의 일반적인 법 집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일반적인 법 집행 간의 자원배분에 관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5. 저작자의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sup>46</sup>하도록 규정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서 적용 가능한 경우 형사 및 행정 절차에 적용한다.

## 제2관 민사 구제<sup>47</sup>

### 제11.59조

####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

1. 각 당사자는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 절차를 권

<sup>46</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법정 신고와 같이 증거 가치를 갖는 서약서 또는 문서를 기초로 이 항을 이행할 수 있다. 당사자는 또한 이러한 추정들이 반증에 의하여 반박될 수 있는 반박 가능한 추정임을 규정할 수 있다.

<sup>47</sup> 당사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23 조 각주 4 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 절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판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리자<sup>48</sup>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피고는 시의적절하고 청구 근거를 포함하여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 통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 절차의 모든 당사자들은 독립 변호인에 의하여 대리되도록 허용되고, 절차는 개인적 출석 의무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한 절차의 모든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고 모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정당한 자격을 갖는다. 그 절차는 그 당사자의 헌법상의 요건과 상충되지 않는 한, 비밀정보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2. 각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1.60조

#### 손해배상

1. 각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한 민사 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사법 당국이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 의한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다<sup>49</sup>.

2. 제1항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사법 당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권리자가 제출하는 어떠한 정당한 가치 측정을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sup>50</sup>

3.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 사법 당국은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sup>51</sup>

---

<sup>48</sup> 이 조의 목적상, “권리자”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연합 및 협회를 포함한다.

<sup>49</sup> 당사자는 또한 상표 비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권리자가 제 1 항과 제 3 항에 규정된 어떠한 구제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 1 항과 제 3 항의 어떠한 구제도 병행해서 명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sup>50</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사법당국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적절한 경우 그들의 시장가격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sup>51</sup> 당사자는 그러한 이익을 제 1 항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는 것을 통하여 이 항을 준수할 수 있다.

## 제11.61조 법원 비용 및 수수료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자신의 사법 당국이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및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 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 및 적절한 변호사 보수, 또는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규정된 그 밖의 모든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sup>52</sup>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제11.62조 침해 상품, 재료 및 도구의 폐기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사법 당국이 민사 사법 절차에서 최소한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및 위조된 상표 상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sup>53</sup>
2. 더 나아가, 각 당사자는 민사 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사법 당국이 그 지배적인 용도가 그러한 침해 상품의 생성에 있었던 재료 및 도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sup>54</sup>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3. 위조된 상표 상품에 관하여,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

<sup>52</sup> 당사자의 사법 당국은 민사 사법 절차의 종결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sup>5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사법 당국이 상품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면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폐기를 대신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피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상품이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음을 양해한다.

<sup>54</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사법 당국이 재료와 도구의 처분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면서, 처분 대신 그러한 재료와 도구의 폐기를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또한 가질 수 있음을 양해한다.

## 제11.63조

### 민사 사법 절차의 비밀 정보

각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사법 당국이 그 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sup>55</sup>의 위반에 대하여, 그 절차의 당사자들, 그들의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제11. 64조

### 잠정조치

1.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 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자신의 사법 당국이 침해 의심 상품 및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압류 또는 그 밖의 보관 조치를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침해 혐의 행위에 지배적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 그리고

나. 침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 서류

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 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자신의 사법 당국이 침해 의심 상품 및 다음 중 최소 하나에 대하여 압류 또는 그 밖의 보관 조치를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침해 혐의 행위에 지배적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 또는

나. 침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 서류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사법 당국이, 적절한 경우, 특히 자연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

<sup>5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목적상, 당사자들은 당사자의 법이 “사법명령”에 대하여 “법원명령”과 같은 대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훼손될 것을 입증할 만한 위험 이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잠정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자는 잠정조치에 대하여 자신의 사법 당국이 신청인이 권리자이며 그 신청 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했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 당 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 할 권한, 그리고 피고를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잠정조치 절차에 대 한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도록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 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50조제4 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잠정조치가 이행되는 것을 양해한다.

### 제3관 국경 조치

#### 제11.65조

#####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의심스러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의 반출 정지

1. 각 당사자는 수입 선적에 대하여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sup>56</sup> 의 수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권리자가 무역관련 지식 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51조에 따라 그 의심스러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

<sup>56</sup> 제 1 관(일반 의무), 제 2 관(민사 구제), 제 3 관(국경 조치), 제 4 관(형사 구제)의 목적상,

가. “위조된 상표 상품” 이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될 수 없는 상표를 허락 없이 부착하여, 이러한 관들에 따라 절차를 제공하는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나.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이란 권리자 또는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가 정당하게 허락한 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복제물로, 그 복제가 이러한 관들에 따라 절차를 제공하는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하였을 물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표 상품의 반출을 정지할 것을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sup>57</sup>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이 관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은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른 적절한 사법, 행정 또는 법 집행 당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11.66조

#### 정지 또는 유치 신청

각 당사자는 권리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지 또는 유치를 위하여 수락된 신청<sup>58</sup>이 적절한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1.67조

####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1.65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의심스러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의 반출 정지)에 언급된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자는 그 담보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 제11.68조

####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비밀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법과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유치했거나 반출을 정지한 경

---

<sup>57</sup> 당사자들은 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시장에 판매된 상품의 수입이나 통과 중인 상품에 그러한 절차를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양해한다.

<sup>58</sup> 이 관의 목적상, 당사자는 “신청서”를 “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우, 그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탁송인, 수입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 및 주소, 그 상품의 명세, 그 상품의 수량, 그리고 알려진 경우 그 상품의 원산지국을 권리자에게 알릴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 제11.69조

#### 직권 조치에 의한 의심스러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의 반출 정지

1. 각 당사자는 수입 선적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체 발의로 의심스러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의 반출 정지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체 발의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입자 및 권리자가 그 정지를 신속히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2. 당사자는 수출 선적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체 발의로 의심스러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의 반출 정지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그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체 발의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출자 및 권리자가 그 정지를 신속히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자는 조치가 선의로 취해지거나 의도되는 경우에만 적절한 구제 조치의 책임으로부터 공공 당국과 공무원을 면제한다.

### 제11.70조

#### 직권 조치의 경우 권리자에 의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되는 정보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체 발의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 관에 언급된 국경 조치를 취할 때 그 권한 있는 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공급하도록 권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당사자는 또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 정보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sup>59</sup>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품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를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 **제11.71조**

####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합리적인 기간 내 침해 결정<sup>60</sup>**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1.65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의심스러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의 반출 정지) 및 제11.69조(직권 조치에 의한 의심스러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의 반출 정지)에 기술된 절차의 개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의심스러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제11.72조**

####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폐기 명령**

각 당사자는 권리자에게 허용되는 그 밖의 권리행사를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사법 당국에 의한 재심을 구할 수 있는 피고의 권리를 조건으로,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으로 결정된 상품의 폐기 및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상품이 폐기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그러한 상품이 권리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보장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관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 **제11.73조**

#### **수수료**

---

<sup>60</sup> 당사자는 의심 상품이 허위의 거래 표시를 지닌다는 결정을 통하여 제 11.69 조(직권 조치에 의한 의심스러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의 반출 정지)에 따른 의심 상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수수료, 물품보관수수료 또는 폐기수수료가 설정 또는 산정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수수료를 이러한 조치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 금액으로 정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 제4판 형사 구제

### 제11.74조 형사 절차 및 처벌

1. 각 당사자는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침해 또는 상표 위조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sup>61</sup>
2. 각 당사자는 상업적 규모의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의 고의적인 수입을 제1항에 언급된 형사 절차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다룬다. 당사자는 그러한 상품의 상업적 규모의 배포 또는 판매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이 조에 따른 수입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기술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다음을 규정한다.
  - 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의 수준에 합치되고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sup>62</sup>
  - 나. 자신의 사법 당국이 의심스러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 그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지배적으로 사용된 관련 재료 및 도구, 그리

<sup>61</sup> 이 조의 적용의 목적상, 제 1 항은 당사자가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형사절차 및 처벌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up>62</sup>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행해서 부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규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고 그 위법혐의행위에 관련된 증거 서류의 압수<sup>63</sup>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다. 자신의 사법 당국은 피고를 위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다음의 몰수 또는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1)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
- 2)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의 제작에 지배적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 그리고
- 3) 위조된 상표가 적용되고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그 밖의 모든 라벨 또는 포장

4. 영상저작물 시장에서 권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영화관에서의 상영으로부터 상업적 규모의 영상저작물 무단 복제<sup>64</sup>를 다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피해를 억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각 당사자는 최소한의 적절한 형사 절차 및 처벌을 포함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sup>65</sup>

## 제5관

###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 제11.75조

#####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

---

<sup>63</sup> 당사자는 재판 전 압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형사 집행 당국에 그러한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이 호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sup>64</sup> 이 항의 목적상, 당사자는 “복제”를 “재생산”과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다.

<sup>65</sup> 이 항의 목적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무단복제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제2관(민사 구제) 및 제4관(형사 구제)에 규정된 집행 절차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그리고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하여 같은 한도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 제11절 협력 및 협의

### 제11.76조 협력과 대화

1.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의 무역 및 투자를 더욱 증진하는 데 지식재산의 활용 및 보호와 지식재산권의 집행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일부 당사자들 간의 현저한 역량 차이를 인정한다.
3.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지식재산 사안에 관한 대화 및 정보 교환에 참여한다.
4. 당사자들은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이용 및 보호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5. 당사자들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국제 무역을 제거하기 위한 국경 조치에 협력한다.
6.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 겸색 및 심사 업무의 공유와 그 당사자들의 특허 제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품질 보증 제도에 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특허 기관 간 협력하도록 노력한다.<sup>66</sup>
7.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온라인 저

---

<sup>66</sup> 이 항은 업무 공유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 간 정보 공유 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

작권 침해 방지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8. 당사자들은 제11.9조(다자 협정)제3항 또는 제11.48조(식물 신품종의 보호)와 관련하여,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예외를 포함한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의 관리에 대하여 협력 할 수 있다.

9. 당사자들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히 유예 기간 관련 사안에 협력하도록 노력 한다.

10. 당사자들은 특히 부여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특히 기관의 절차 및 과정과 관련된 사안에 협력할 수 있다.

11. 당사자들은 적용대상이 되는 제도, 절차 및 상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들 각자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12. 당사자들은 유전자원과 연계된 전통지식에 대한 특히 출원을 심사하는 특히 심사관의 훈련에 협력할 수 있다.

13. 이 장에 따른 모든 협력 활동은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당사자의 요청에 따르며, 관련 당사자들의 자원 이용 가능성 및 관련 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제12절

### 투명성

## 제11.77조

### 투명성

1. 각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이용 가능성, 범위, 취득, 집행 및 남용 방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사법 결정과 행정 판정이 공표되거나, 그러한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당사자들과 권리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소한 그 당사자

자신의 언어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자는 실행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최종 사법 결정이 온라인에 공표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sup>67</sup>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도에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정보,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등록 및 만료일과 같은 그 지식재산권의 법적 지위 정보를 공표하거나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13절 경과기간 및 기술 지원

### 제11.78조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을 위한 경과기간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발효일 전이나 발효일에 또는 그 후에 세계무역기구에서 합의되었거나 합의될 수 있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과기간을 이용하는 어떠한 당사자의 권리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

## 제11.79조 당사자별 경과기간

1. 각 당사자의 상이한 발전 단계에 주목하며 제11.78조(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을 위한 경과기간)를 저해함이 없이, 당사자는 부속서 11-가(당사자별 경과기간)에 따라 이 장의 특정 규정의 이행을 지연할 수 있다.

2. 부속서 11-가(당사자별 경과기간)에 규정된 관련 기간 동안,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부속서 11-가(당사자별 경과기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의무와의 합치를 감소시키도록 조치를 개정하거나, 이 협정의 서명일에 유효한 그 당사자의 관련 조치들보다 그려

---

<sup>67</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에 자신의 법과 규정에 온라인 공표를 명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한 의무와 덜 합치되는 새로운 조치를 채택하지 않는다. 이 조는 당사자 및 다른 당사자가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따른 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11.80조

### 당사자별 경과기간 관련 통보

1. 부속서 11-가(당사자별 경과기간)에 규정된 대로 이 장에 따른 의무에 대하여 당사자별 경과기간을 가진 어떠한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그러한 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 및 진전 상황에 대하여, 기업환경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가.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그 당사자는 경과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통보한다. 그리고

나. 5년을 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그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그 발효일에 통보하고, 그 경과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통보한다.<sup>68</sup>

2. 어떠한 당사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다른 당사자의 진전 상황에 관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자는 그러한 요청에 신속히 답변한다.

3. 경과기간의 만료일보다 늦지 않게, 당사자별 경과기간이 있는 당사자는 그 밖의 당사자들에 경과기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하여 통보한다.

4. 당사자가 제3항에 언급된 통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안은 기업환경위원회의 차기 정기 회의 의제로 자동 상정된다.

---

<sup>68</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는 부속서 11-가(당사자별 경과기간)에 규정된 경과기간의 어떠한 연장에도 적용된다.

**제11.81조**  
**기술 지원**

1. 제15장(경제 및 기술 협력)의 목적에 따라, 당사자들은 부속서 11-나(기술 지원 요청 목록)에 규정된 대로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확인된 필요에 따라 필요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기로 합의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기술 지원은 관련 당사자들의 관련 규칙과 규정 및 지원 이용 가능성 조건으로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제14절**  
**절차 문제**

**제11.82조**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위한 절차의 개선**

당사자들은 그들의 지식재산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제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위한 자신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한다.

**제11.83조**  
**서면에 대한 절차 요건의 간소화**

제11.82조(지식재산권의 관리를 위한 절차의 개선)에 더하여, 각 당사자는 다음에 대하여 자신이 유지하는 절차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특히 출원과 관련한 번역의 인증, 그리고
- 나. 특히, 산업디자인 및 상표 출원과 관련한 서명의 인증